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5.01.01 기준)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40,650	37,630	34,740	33,160	31,580	31,58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54,490	50,470	46,590	45,000	43,400	43,40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54,780
13시간 초과	80,060	74,170	68,520	66,930	65,350	54,780
등급외 수급자 (일)부담금	41,470					

< (안내) 수급자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	15 %
기초수급권자	0 %	0 %
적용기간 : 2018.07.31 까지적용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	7.5 %
적용기간 : 2018.08.01 부터적용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	6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12 %	9 %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별표 2 】

◇ 일반수급자 일수별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원, 부담비율 15%)

등 급	이용시간	1일(일반)	감경6%	감경9%	20일	25일
1등급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0,160	4,060	6,090	203,310	254,130
	13시간 초과	12,000	4,800	7,200	240,180	300,220
2등급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9,410	3,760	5,650	188,340	235,420
	13시간 초과	11,120	4,450	6,670	222,510	278,130
3등급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8,690	3,470	5,210	173,880	217,350
	13시간 초과	10,270	4,110	6,160	205,560	256,950
4등급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8,450	3,380	5,070	169,140	211,420
	13시간 초과	10,030	4,010	6,020	200,790	250,980
5등급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8,210	3,280	4,930	164,340	205,420
	13시간 초과	9,800	3,920	5,880	196,050	245,060
인지지원	*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 급여수가와 동일. 평일(월-금) 기준 월 12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본인부담금은 야간가산 20%, 토요일 및 공휴일가산 30%를 산정하지 않았으며 실제 이용한 횟수, 이용시간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아침		점심	3,000 원	저녁	3,000 원	간식	1,000 원
----	--	----	---------	----	---------	----	---------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이미용비	
------	--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